해외여행자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해외에서 휴가나 여행을 즐기려는 국민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해외여행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알아둬야 할 지 막연하다면 여행의 기쁨도 잠시 뿐일 텐데요.

이에 이 콘텐츠에서는 해외여행 준비, 출국, 해외여행하기, 입국, 해외여행 관련 분쟁해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전반적인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해외여행자 1
1. 해외여행 개관 4
1.1. 해외여행의 개요 4
1.1.1. 해외여행 한눈에 보기 4
2. 해외여행 준비하기 8
2.1. 여권 · 비자 8
2.1.1. 여권 8
2.1.2. 비자 11
2.2. 환전 · 여행자보험 가입 11
2.2.1. 환전 11
2.2.2. 여행자보험 가입 12
2.3. 여행사 이용 시 알아둘 사항 13
2.3.1. 여행계약 체결 13
2.3.2. 여행계약에 따른 의무와 책임 14
2.3.3. 여행계약의 변경, 해제 및 해지 15
2.4. 그 밖의 준비사항 19
2.4.1. 병무사항 확인 19
2.4.2. 건강·안전정보 확인 22
3. 해외여행 하기 25
3.1. 출국 25
3.1.1. 출국절차 25
3.1.2. 출국금지제도 31
3.2. 해외여행하기 32
3.2.1. 위기상황 대처방법 32
3.2.2. 해외여행 중 도움받기 35
3.3. 입국 37
3.3.1. 입국절차 37
3.3.2. 해외여행 후 건강정보 40
4. 해외여행관련 분쟁해결 41
4.1. 법원 밖에서의 해결 41
4.1.1. 관광불편신고를 통한 해결 41
4.1.2. 여행불편처리센터를 통한 해결 41
4.1.3. 소비자단체를 통한 해결 42
4.1.4.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통한 해결 44
4.1.5.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46
4.2. 법원을 통한 해결 49
4.2.1. 법원을 통한 해결방법 49

1. 해외여행 개관

1.1. 해외여행의 개요

1.1.1. 해외여행 한눈에 보기

해외여행 준비

여권·비자

▪ 여권

▹ 해외여행을 하려는 국민은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한 주민등록지, 주소지와 상관없이 <여권신청·발급-접수기관 안내> 어디에서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2조, 제21조제1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 여권 발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여권을 발급받으러 가실 때에는 신분증, 여권용 사진 1장, 여권발급수수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여권법」 제9조제3항, 제22조, 「여권법 시행령」 제5조).

▪ 비자

▹ 국민이 외국에 입국하려면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국내에 있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미리 여행목적에 따른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비자 발급은 각 국가의 주권사항이므로, 각국 비자의 취득 관련 사항은 해당 국가의 주한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 다만,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여행을 가려는 국민은 협정에서 인정한 일정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여행사 이용 시 알아둘 사항

▪ 여행계약의 체결

▹ "여행계약"은 여행업자가 해외여행자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해외여행자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체결됩니다(「민법」 제674조의2).

▹ 여행업자는 해외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해외여행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7조).

▹ 해외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① 계약금(여행요금 중 10% 이하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해야하며, ② 잔금을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0조제3항 및 제4항).

▪ 여행계약에 따른 의무와 책임

▹ 여행사의 의무와 책임

√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① 여행급부이행의무, ②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의무, ③ 약관 중요내용 등 설명의무, ④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할 의무, ⑤ 손해배상책임, ⑥ 여행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집니다(「민법」 제674조의6,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3조제1항, 제14조, 제15조, 제20조 및 제21조).

▹ 여행자의 의무

√ 여행자는 여행사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한 ① 협조의무, ② 여행대금 지급의무를 집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 및 제4항).

▪ 여행계약의 변경, 해제 및 해지

▹ 여행계약의 변경

√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일정한 경우에 여행요금 또는 여행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행요금 정산이나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1조 및 제12조).

▹ 여행계약의 해제해지

√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제31호 여행업).

√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674조의4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8조).

그 밖의 확인사항

▪ 병무사항

▹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25세 이상인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1항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5조).

▪ 환전

▹ 해외여행자는 시중 은행이나 공항에 위치한 환전소에서 해외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환전하여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

▹ 환전한도는 제한이 없으나, 환전금액이 건당 미화(US$)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제5항, 제4-8조제1항제4호 및 제6-2조제2항제2호).

▪ 여행자보험 가입

▹ 해외여행자는 신체상해 손해, 질병치료,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 등 해외여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손해보험회사 본사 콜센터, 대리점, 공항 내 보험회사창구 및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건강 및 안전정보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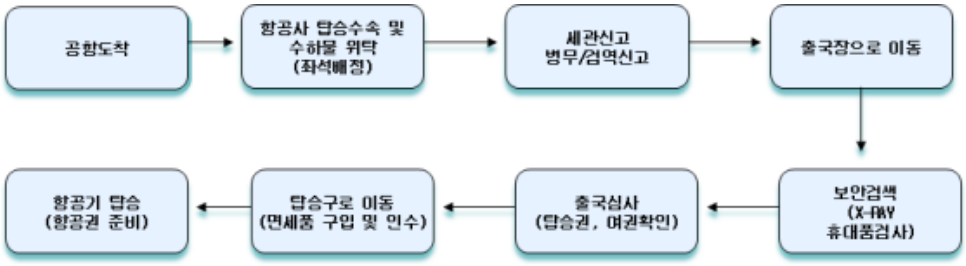
▹ 해외여행자는 여행 전에 여행할 국가의 건강상 위험요인 유무와 필요한 예방접종이나 약품 등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여행자는 안전한 여행을 위해 여행할 국가의 여행경보단계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단계별 행동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여행 하기

출국

▪ 해외여행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를 거쳐 출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하기

- 해외여행 중에는 도난·분실, 인질납치,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 뜻하지 않은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상황별 대처방법을 잘 숙지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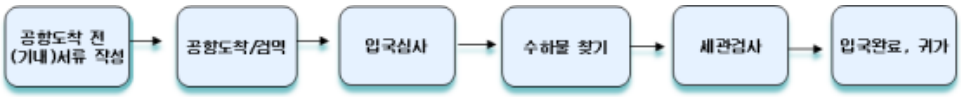
- 해외여행자는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여행 중 <영사안전콜센터>를 이용하거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자는 건강한 해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여행 중 건강관련 주의사항을 숙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국

- 입국절차

  - 해외여행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를 거쳐 입국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 후 건강관련 주의사항

  -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후 의심스러운 질환이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가까운 병원의 의사를 찾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여행관련 분쟁해결

법원 밖에서의 해결

- 관광불편신고센터를 통한 해결

  -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 불편사항을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참고: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 홈페이지).

- 여행불편처리센터를 통한 해결

  - 해외여행자는 여행업 등록업체인 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과 관련된 각종 불편, 계약불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운영하는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참고: 한국여행업협회 여행불편처리센터 홈페이지).

- 소비자단체를 통한 해결

  - 해외여행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에서 해외여행관련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받거나 합의의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28조제1항제5호).

  -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외여행자가 직접 또는 소비자단체가 해외여행자를 대신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31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

▪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통한 해결

▹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전화나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7조).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대응방법 안내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자는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

법원을 통한 해결

▪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 분쟁을 민사조정, 화해, 독촉절차(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 등 법원을 통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민법」 제731조·제732조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2. 해외여행 준비하기

2.1. 여권 · 비자

2.1.1. 여권

여권 개관

여권의 개념 및 종류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여권법」 제2조 및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참조).

▪ 여권의 종류에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과 긴급여권이 있는데, 해외여행을 하려는 국민은 이 중 "일반여권"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여권법」 제4조).

※ 일반여권의 종류에는 ①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과 ②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이 있습니다(「여권법」 제4조제2항).

일반여권의 발급

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여권발급 거부 대상이 아닌 사람은 일반여권(이하 "여권"이라 함)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2조).

※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여권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2조제1항).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함)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2.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위 2.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되지 않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경고를 받은 사람

외교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

1.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사람 : 2년
2.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1년
3. 외국에서 살인, 강도, 납치, 인신매매, 성범죄, 마약류범죄, 밀항·밀입국이나 그 밖의 중대한 위법행위(유죄판결이

확정된 행위로 한정)를 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① 강제퇴거 조치나 ②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항의나 시정·배상·사죄 요구 조치, ③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에 대하여 권익제한이나 의무부과를 신설·강화하는 조치를 받고 그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 다음에 따른 기간

·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法定刑)이 단기 1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거나 그 보다 중한 경우: 3년

·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이 단기 1년 미만이면서 장기 3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경우: 2년

·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이 단기 1년 미만이면서 장기 3년 미만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경우: 1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의 내용 및 횟수, 국위(國威)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여권법」 제12조의2제3항).

여권 발급 및 수령

여권 발급 신청

여권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 발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9조제3항 및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항).

신청인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8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신청인의 배우자로서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 신청인 또는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	18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친권자(18세 미만인 사람도 포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신청인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 보호자(18세 미만인 사람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접수처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주소지와 상관없이 <여권신청·발급-접수기관 안내> 어디에서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21조제1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발급비용

여권발급 비용(수수료와 국제교류기금 모금액의 합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여권법」 제22조제4항, 「여권법 시행령」 제39조, 별표0,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제2항,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별표1).

여권종류	구분			발급비용		
				면수	국내	재외공관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이내 (18세 이상)		58면	52,000원	52달러
				26면	49,000원	49달러
		5년 (18세 미만)	8세 이상	58면	44,000원	44달러
				26면	41,000원	41달러
			8세 미만	58면	35,000원	35달러
				26면	32,000원	32달러
		5년 미만		26면	17,000원	17달러
	단수여권	1년 이내		-	17,000원	17달러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	50,000원	50달러
				-	17,000원주)	17달러

주)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 구비서류

▹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5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

√ 여권 발급신청서(「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여권용 사진[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가 3.2cm 이상 3.6cm 이하인 가로 3.5cm, 세로 4.5cm의 사진을 말함] 1장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등

▪ 여권 수령

▹ 여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위에도 불구하고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여권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18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여권발급 신청을 대리하지 않은 대리인이 여권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보여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하려는 경우 민원인은 그 의사를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표시하되, 수령가능한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 ※ 여권발급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비자·여권』 콘텐츠 또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2. 비자

비자 개관

외국 입국 시 비자의 취득

▪ 국민이 외국에 입국하려면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국내에 있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미리 여행목적에 따른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여행을 가려는 국민은 협정에서 인정한 일정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우리 국민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 및 기간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영사협정/사증(비자)>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 취득

비자 취득 방법

▪ 기본적으로 비자 발급은 각 국가의 주권사항이므로, 각국 비자의 취득 관련 사항은 해당 국가의 주한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 ※ 각국 주한대사관의 주소 및 연락처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해외안전정보-국가/지역별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미국, 중국(홍콩 포함) 및 일본으로의 여행을 위해 필요한 비자 관련 정보는 이 사이트 『비자·여권』 콘텐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 환전 · 여행자보험 가입

2.2.1. 환전

환전

여행경비의 환전

▪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외화현찰, 여행자수표, 여행자카드 등으로 환전하여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14호 및 제2-3조제1항제1호다목).

▹ 외화현찰: 해외여행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환전수단이며, 여행국가의 현찰을 권종별로 미리 환전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사용하실 때 편리합니다.

▹ 여행자수표: 해외여행 시 현금휴대에 따르는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된 수표로 현금과 같이 사용 가능하며, 은행, 환전상 등에서 손쉽게 현지통화와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카드: 해외여행경비 지급을 위한 수단으로 외국환은행이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외화금액을 기록하여 발행 또는 판매하는 증표로서 여행자카드 매입자가 그 기록된 범위 내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합니다.

▪ 환전한도는 제한이 없으나, 환전금액이 건당 미화(US$)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제5항, 제4-8조제1항제4호 및 제6-2조제2항제2호).

▪ 환전은 시중 은행(인터넷 환전도 가능)이나 공항 등에 위치한 환전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 해외여행경비의 환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 여행정보센터 홈페이지-여행준비-금융&보험-환전 안내> 또는 <각 시중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2. 여행자보험 가입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해외여행자보험의 개념 및 보상내용

▪ "해외여행자보험"이란 신체상해 손해, 질병치료,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 등 해외여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 주요 보상내용

▹ 여행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여행 중 발생한 질병(감염병 포함)으로 사망한 경우

▹ 여행 중 가입자의 휴대품 도난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통화, 유가증권, 신용카드, 항공권 등은 보상하는 휴대품에서 제외하며, 휴대품의 방치나 분실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입방법 및 가입 시 유의사항

▪ 손해보험회사 본사 콜센터, 대리점, 공항 내 보험회사창구 및 인터넷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 보험가입 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다음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 여행지(전쟁지역 등) 및 여행목적(스킨스쿠버, 암벽등반 여부 등)

▹ 과거의 질병여부 등 건강상태

- 다른 보험 가입여부 등

※ 가입자의 직업, 여행지 등 사고발생 위험에 따라 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실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가입 시 보험회사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콘텐츠의 해외여행자보험 관련 내용은 모두 <금융감독원, "해외여행보험 가입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해외여행자보험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한국여행업협회 여행정보센터 홈페이지-여행정보-금융＆보험-여행자보험> 부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3. 여행사 이용 시 알아둘 사항

2.3.1. 여행계약 체결

여행계약의 체결

여행계약의 내용

▪ "여행계약"은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여행자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체결됩니다(「민법」 제674조의2).

▪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4조제1항).

-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4조2항).

-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4조3항).

▪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6조).

계약서 및 약관 등의 교부

▪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7조).

▪ 여행사와 여행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8조).

-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또는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또는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여행요금의 지급

▪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 이하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해야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0조제3항).

▪ 여행자는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0조제4항).

▪ 여행자는 여행요금을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0조제5항).

여행계약 체결의 거절

▪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5조).

▹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2.3.2. 여행계약에 따른 의무와 책임

여행사의 의무와 책임

여행사의 의무

▪ 여행급부이행의무

▹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3조제1항).

▪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의무

▹ 여행사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을 포함한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하는 국가 목록 및 「여권법」 제26조제3호에 따른 벌칙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및 국가별 안전정보(긴급연락처 포함)

√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 제도에 관한 안내

▪ 설명의무

▹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20조).

▪ 보험가입 등의 의무

▹ 여행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21조).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

▪ 여행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3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9조).

▪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제1항).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해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비자,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제2항).

▪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지연출발 및 도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제3항).

▪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제4항).

여행사의 담보책임

▪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74조의6제1항).

▸ 위의 시정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야 합니다. 다만,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674조의6제2항).

▸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4조의6제3항).

▪ 여행자는 위에 따른 권리를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674조의8).

▪ 위의 사항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674조의9).

여행자의 의무

협조의무

▪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 사이의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3조제2항).

여행대금 지급의무

▪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 이하의 금액)을,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잔금을 여행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0조제3항·제4항).

2.3.3. 여행계약의 변경, 해제 및 해지

여행계약의 변경

여행요금의 변경

▪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1조제1항].

▹ 여행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 시보다 5% 이상 증감한 경우

▹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 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 여행사는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1조제2항).

▪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제4항).

여행조건의 변경

▪ 여행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 여행조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제1항).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위에 따르지 않고 여행조건이 변경되어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제5항).

▪ 여행조건의 변경으로 인한 요금 정산

▹ 여행조건의 변경으로 인하여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제4항).

▪ 여행자의 사정에 의해 여행계약 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제6항 본문).

여행계약의 해제·해지

여행계약의 해제

▪ 최저 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의 계약해제

▹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7조제1항).

▹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위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의 환급 외에 다음의 금액을 해외여행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7조제2항).

√ 여행출발 1일 전까지 통지 시: 여행요금의 30%

√ 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여행요금의 50%

▪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민법」 제674조의3,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Ⅱ. 서비스업 부문, 제8호 ④ 국외여행(2-1)].

피해유형	배상기준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제2항).

계약해제권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 해제가 가능한 경우
여행사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5.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여행자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여행사가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4.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5.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6.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명 7.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8.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여행계약의 해지

▪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674조의4제1항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8조제1항).

▹ 위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민법」 제674조의4제2항제3항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8조제2항).

▪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4조의7제1항).

√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해야 합니다(「민법」 제674조의7제2항).

√ 여행주최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4조의7제3항).

▹ 위 내용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674조의9).

2.4. 그 밖의 준비사항

2.4.1. 병무사항 확인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허가

허가대상

▪ ①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및 ②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1항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5조).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2. 25세 이상인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3.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4.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 24세 이하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해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4세 이하인 사람도 현역,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해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기간연장허가 또는 해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1항 및 제3항).

허가제한 대상자

▪ 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① 해외여행허가를 하지 않거나(위의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국외여행허가 대상자인 경우), ② 해외여행이 제한되도록(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인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2항 본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4항).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입영·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연기, 재병역판정검사, 입영·소집 연기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다만, 영주귀국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사람

▪ 다만, 가족의 사망 등 다음의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에는 해외여행허가나 해외여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병역법」 제70조제2항 단서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5항).

- 국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사망
-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본인 질병의 치료
- 입영·소집을 위한 가사의 정리

해외여행허가의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해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 본문, 「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 별지 제132호의2서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5조 및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 국외체재-허가 절차 안내).

√ 방문접수: 모든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다만,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만 접수)

√ 인터넷 신청: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재>

허가기간 및 신청 시 구비서류

▪ 해외여행 허가대상별 허가기간 및 허가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제70조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 제146조, 「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 별지 제132호의2서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5조 및 별표 1).

여행 목적	허 가 대 상	허 가 기 간	구 비 서 류
	가. 병역준비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대체복무요원소집대상. 다만, 병역준비역 중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및 기본병과장교편입대상자(이하 “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이라 함)는 나목에 따라 허가함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허가할 수 있음. 다만,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 제1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0세까지로 함 1) 1회에 1개월 이내. 이 경우 동일사유 기간연장허가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2) 통틀어 2년 이내 3)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이 경우 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없으며, 허가기간 만료일 이내에 귀국하지 않은	가)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경우에도 단기 국외여행으로 다시 허가할 수 없음	
단기국외 여행	나.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병역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를 포함),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특수병과사관후보생 등	1회에 1개월 범위(「병역법 시행령」 제78조의4 또는 제88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요원은 그 유예기간 또는 수학기간을 통틀어 1개월 이내)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이 경우 동일사유로 기간연장허가는 할 수 없음 1) 복무, 수학 또는 수련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업체의 장의 추천기간 범위 내 2) 수련기관 등에서 수련과정 등을 이수하였거나 퇴직 등으로 입영 대기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입영부대에서 귀가, 퇴교 또는 퇴영한 사람은 입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다만,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3) 해당 병적에 편입된 후 복무기관·업체 배치 전에 있는 사람 또는 전직 대기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배치 또는 전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업체의 장의 추천서 * 추천기간은 개별 복무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따르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휴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수학을 마쳤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 등으로 입영대기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입영부대에서 귀가, 퇴교 또는 퇴영한 사람과 해당 병적에 편입된 후 복무기관·업체 배치 전에 있는 사람 또는 전직 대기기간 중에 있는 사람. 「병역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는 추천서 제출 생략 나)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다) 비행기표, 일정표 등 여행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허가기간이 16일 이상인 2) 또는 3)에 해당하는 사람

> ※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병역의무자(입영 전)』 의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허가신청>부분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 국외체재-허가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4.2. 건강·안전정보 확인

해외여행 전 건강정보

여행자 주의사항(출처: 해외감염병 NOW)

- 여행국가 감염병 발생정보 확인하기
  - 해외여행 전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 또는 콜센터 ☎1339에서 국가별 감염병 발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국 전 예방접종 받기
  - 해외여행 국가별 예방접종이 필요한 백신은 출국 최소 2주 전에 접종받습니다. 황열 예방 백신은 국제공인예방접종 지정기관에서, 그 외 백신(예; A형간염, 장티푸스, 폴리오 등)은 가까운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합니다.
- 해외여행 시 개인 위생수칙 준수하기
  - 낙타, 조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주의해야 합니다.
- 입국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하기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에 체류・경유한 경우, 입국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 발생 시 검역관에게 신고합니다.
- 귀국 후 감염병 증상 발생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신고하기
  - 귀가 후 감염병 잠복기 내에 증상 발생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 신고하면, 보건소 연계 및 행동요령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 국가별 감염병 정보, 예방접종 관련 국가별 요구사항, 예방접종기관 안내 등 해외여행 전 건강정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해외감염병 NOW>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안전정보

여행경보제도(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여행경보-여행경보제도)

- "여행경보제도"란 특정 국가(지역) 여행·체류 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행동지침)의 기준을 안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해외여행을 가시는 국민은 안전한 여행을 위해 목적지 국가의 여행경보단계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단계별 행동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 여행경보의 지정
  - 여행경보: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험(위협)을 중요한 기준으로 해당 국가(지역)의 치안정세와 그 밖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안전대책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정·공지되고 있습니다.

▹ 특별여행주의보: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국가(지역)에 대하여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하여 발령하합니다. 다만, 발령 기간은 90일을 넘지 않습니다.

▪ 여행경보단계와 각 단계별 행동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경보단계	체류자	여행예정자
1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	신변안전 특별유의	불필요한 여행 자제
3단계 적색경보(출국권고)	긴급용무가 아닌 한 출국	여행 취소·연기
4단계 흑색경보(여행금지)	즉시 대피·철수	여행금지 준수
특별여행주의보(철수권고)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 취소·연기

※ 국가별 여행경보, 특별여행경보 발령형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여행경보-여행경보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금지제도

▪ 여행금지제도의 개념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위난(危難)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7조제1항 본문 및 「여권법 시행령」 제28조).

√ 대규모의 태풍·해일지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 전쟁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 내란이나 폭동이 발생하여 해당 국가의 치안 유지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테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 대규모의 폭발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

√ 대규모 감염병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보건·의료기능 등이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 여행금지제도 위반 시 제재

▹ 위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여권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를 받지 않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권법」 제24조제2호).

※ 여행금지국가 지정현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여행경보-여행경보제도-여행금지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해외여행 전에 "모바일 동행서비스"를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바일 동행서비스"의 이용방법과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모바일 동행서비스" 이용을 하려는 경우, 해외안전여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여행일정, 가족이나 지인의 비상연락처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사전에 여행일정을 등록해 두면 국가별 최신 안전정보가 실시간 푸시 알림으로 제공되며, 또한 위급상황 발생 등 필요시 등록된 비상연락처를 통해 국내 가족 또는 지인에게 위치정보(위도 경도 및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즉각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노후 기종 등 휴대전화 단말기 상태 및 현지통신 사정 등에 따라 모바일 동행서비스의 문자메시지 전송이 제한되거나 위치정보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외교부-안전여행서비스-해외안전여행 애플리케이션 참조>

3. 해외여행 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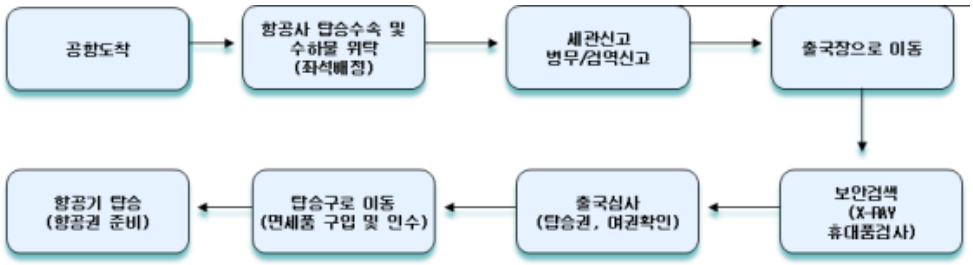
3.1. 출국

3.1.1. 출국절차

출국절차 한눈에 보기

출국절차도

▪ 해외여행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를 거쳐 출국할 수 있습니다.



출국절차별 주요 내용

공항도착

▪ 항공기 탑승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항에 도착하시면 좋습니다.

탑승수속(출처: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 일반 탑승수속 카운터를 이용할 경우

▹ 출발 전 항공권과 여권 유효기간과 서명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세관신고와 출국심사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 탑승할 비행기의 항공사 탑승수속카운터를 확인한 후 해당 카운터로 이동하여 탑승수속을 밟습니다.

▪ 셀프체크인을 이용할 경우

▹ 공항에 설치된 키오스크(Kiosk: 무인탑승수속기)를 이용하면 항공사 탑승수속카운터에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좌석배정과 탑승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셀프체크인 서비스 제공유무, 자세한 이용방법 등은 이용하시려는 항공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하물 위탁(출처: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 기내반입(짐을 들고 탑승)

▹ 항공편을 이용한 여행을 하게 되면 공항에서 항공사별로 운영되는 체크인카운터에서 수하물을 위탁 처리하거나 기내용 캐리어, 배낭 등을 휴대하여 보안검색 절차를 거쳐 항공기에 탑승하게 됩니다.

▹ 기내 반입이 가능한 휴대수하물은 액체류 반입 제한이 있고 이동 시 불편하므로 일반적으로 위탁수하물로 대부분의 짐을 부치고, 개인 휴대물품이 든 손가방, 노트북가방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합니다. 또한, 카메라, 귀금속류 등 고가의 물품과 도자기, 유리병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직접 휴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공기 내로 반입할 수 있는 짐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일반석에 적용되는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는 개당 55 × 40 × 20(cm) 3면의 합 115(cm) 이하로써 10kg~12kg까지입니다.

※ 기내반입 기준은 각 항공사별 또는 좌석 등급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공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액체·분무겔류의 기내반입 허용범위

√ 액체폭탄이 국제적으로 새로운 위협으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2007. 3. 1.부터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대하여 액체·분무겔류의 항공기 객실 내 휴대반입 제한조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 액체·분무겔류의 기내반입은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기내반입 금지 물품	반입 가능 물품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액체: 물, 음료, 소스, 로션, 향수 등 ·분무: 스프레이류, 탈취제 등 ·겔: 시럽, 반죽, 크림, 치약, 마스카라, 액체/고체 혼합류 등 ·그 밖에 실온에서 용기에 담겨 있지 않으면 형태를 유지할 수 없는 물질	·모든 물질이 개당 100ml 이하 용기에 들어 있으면서, 모든 용기가 1L 투명봉투 한 장에 담기고, 입구를 완전히 닫아서 밀봉한 경우 ·처방전 있는 의약품, 처방전 있는 처방음식, 시판약품, 의료용구 ·유아 동반시 함께 휴대하는 유아용품	·면세점에서 발행한 영수증이 함께 부착되어 투명 봉인봉투에 밀봉된 경우, 용량에 무관하게 기내반입 가능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개봉하지 않아야 함

※ 액체·분무·겔류의 기내반입 허용범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공항이용안내-출국절차-보안검색-제한물품>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하물위탁(짐을 맡기고 탑승)

▹ 수하물 위탁 처리는 공항 내 항공사별로 운영되는 체크인카운터에서 합니다.

※셀프체크인을 할 경우 수하물 위탁은 셀프체크인 전용 카운터를 이용합니다.

▹ 통상적으로 미주노선인 경우 일반석에 적용되는 수하물은 3면의 합이 158(cm) 이하로써 23kg 2개까지입니다.

▹ 수하물 무료운송기준은 항공사, 노선별, 좌석 등급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하실 항공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관신고

▪ 외화반출

▹ 해외여행자는 미화(US$) 1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를 휴대반출 시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2항제2호).

▪ 귀중품 및 고가품 반출

▹ 출국 시 휴대하여 반출하였다가 입국 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해외여행자는 세관에 휴대물품의 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3조제1호).

▸ 위에 따른 휴대물품을 반출하는 해외여행자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고하거나 출국시 신고하여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입국 시에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4조제1항 및 별지 제8호서식).

> ※ 해외여행자의 출국 시 세관신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세청종합상담센터(☎ 국번없이 12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병무신고

▪ 다음의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지방병무청장의 해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 당일 법무부 출입국에서 출국심사 시 국외여행 허가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제6항 본문, 「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제3항, 별지 제134호의2서식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5조).

▸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 25세 이상인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 ※ 병역의무자인 해외여행자의 국외여행허가 신청방법은 이 콘텐츠 <해외여행 준비-그 밖의 준비사항-병무사항 확인>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자검역

▪ 해외여행자는 검역소에서 황열 및 콜레라 등 검역대상 감염병의 예방접종과 그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28조제3항, 「검역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본문 및 별지 제31호서식).

※ 여행하실 국가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을 받으러 갈 때에는 여권(또는 여권사본)과 다음의 예방접종비용 및 증명서 교부 수수료를 준비합니다.

※Ⓜ황열백신은 국가(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므로 백신비용은 병원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인지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 ※ 황열, 콜레라, 말라리아 등 주요 감염병에 대한 국가별 예방접종 요구사항, 예방접종기관안내 등 자세한 예방접종 정보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감염병>해외감염정보>국가별 감염병예방정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강아지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가려는데,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A. 반려동물(개, 고양이 기준)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 1단계: 출국준비

√ 반려동물을 데리고 출국하려면 입국하시려는 국가의 검역조건을 충족해야하므로, 사전에 입국하시려는 국가의 대사관 또는 동물검역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검역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3항).

√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물병원 수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2단계: 검역증명서 발급 신청

√ 반려동물을 데리고 출국할 해외여행자는 공항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 제41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7조제1항, 별지 제14호서식 및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25조제1항).

1. 동물검역신청서

2.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동물병원 등에서 발급하는 건강하거나 가축전염병의 전파 우려가 없다는 사실)

3. 입국하려는 국가의 요구사항(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검역관이 검역받은 동물에게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5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별지 제16호서식).

※ 검역수수료는 10,000원/건입니다.

· 3단계: 항공기 탑승

√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으신 후 항공사 데스크로 가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반려동물의 기내 탑승에 관하여는 이용하시려는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동물검역-동물축산물검역-개고양이 검역절차 참조>

출국장 이동 및 보안검색

▪ 탑승수속 및 세관신고 등을 마친 해외여행자는 가까운 출국장으로 이동하여 보안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보안검색"이란 불법방해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합니다(「항공보안법」 제2조제9호, 제15조제1항).

▪ 보안검색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 됩니다(출처: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



출국심사

▪ 해외여행자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여행할 국가 또는 경유하는 국가의 유효한 입국사증 소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조제1항).

▪ 출국심사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 됩니다(출처: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



Q.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면 일반출입국심사보다 빠르고 편리하다던데,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A. "자동출입국심사"란 출입국심사관 대신 정보화기기가 해외여행자의 지문 및 얼굴정보와 등록된 지문 및 얼굴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하고, 해당 해외여행자가 출입국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로 2008. 6. 26.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조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

· 이용대상: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해외여행자는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조제2항, 제6조제3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

1.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

2.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스스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자동출입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3. 출국금지 또는 긴급출국금지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4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7세 이상 14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4. 그 밖에 「여권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거나 반납명령을 받은 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 이용방법: 성인인 대한민국 국민은 사전등록 절차 없이 바로 이용가능합니다(출처: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

· 자동출입국심사 이용가능대상(출처: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



·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절차(출처: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



탑승구로 이동 및 항공기 탑승

- 출국심사를 마친 후에는 탑승권이나 운항정보모니터에 있는 탑승게이트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 이용하실 항공사의 탑승 요청 시간까지 탑승구로 이동하여 탑승합니다.

3.1.2. 출국금지제도

출국금지

해외여행자의 출국금지

- 출국금지 대상자

법무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3.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4.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
5.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6.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7. 그 밖에 위 1.부터 6.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병역법」 제65조제6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사회복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전시근로역·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에 따라 징병검사, 입영 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 종전 「병역법」(2004.12.31.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5조제4항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병역의무불이행자

√ 「병역법」 제86조를 위반하여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출입국항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변조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 한 사람

√ 3천만원 이상의 공금횡령(橫領) 또는 금품수수(收受)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 출국 시 공중보건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출국금지결정 통지

▹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한 경우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제1항).

▹ 다만, 법무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결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제3항).

√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만,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지기간이 3개월을 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함)

√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 출국금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출국이 금지된 사람은 출국금지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제1항).

▪ 출국금지의 해제

▹ 출국금지는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해제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제1항).

Q. 본인이 출국금지대상자인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A. 출국금지는 개인정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는 알려드리지 않고 공동인증서를 가진 본인이 온라인(PC)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및 소송수임 변호인은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출처: 하이코리아-정보조회-기타 조회 서비스-출국금지 여부 조회).

※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 주소 및 연락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내 소속기관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2. 해외여행하기

3.2.1. 위기상황 대처방법

해외여행 중 위기상황 대처방법

상황별 대처방법

▪ 해외여행 중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이렇게 대처하세요!

위기상황	대처방법

도난/분실	여권 분실	·여권 분실한 경우 즉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여권분실 증명서를 만듭니다.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을 말함, 이하 같음)에 신분증, 여권분실 증명서 원본, 여권용 컬러사진 사진 2장, 수수료 등을 지참하여 여권발급신청서(재외공관용), 여권 분실신고서 등을 작성한 후 여권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여권 분실 시 중국 공안당국은 재외공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여행증명서가 있더라도, 공안당국이 발행한 여권분실증명서가 있어야 출국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현금 및 수표 분실	·여행경비를 분실·도난당한 경우, "신속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합니다(재외공관 & 영사콜센터 문의). ·여행자 수표를 분실한 경우, 경찰서에 바로 신고한 후 분실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여권과 여행자수표 구입 영수증을 가지고 수표 발행은행의 지점에 가서 분실 신고서를 작성하면, 여행자수표를 재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T/C의 고유번호, 종류, 구입일, 은행점명, 서명을 알려줘야 합니다.
	항공권 분실	·항공권을 분실한 경우 해당 항공사의 현지 사무실에 신고하고 항공권 번호를 알려줍니다.
	수하물 분실	·수하물을 분실한 경우, 화물인수증(Claim Tag)을 해당 항공사 직원에게 제시하고, 분실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공항에서 짐을 찾을 수 없게 되면, 항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합니다.
부당한 체포 및 구금		·침착하게 현지 사법당국의 절차에 따르고, 우리 공관에 구금 사실을 알리도록 요청합니다. ·본인이 모르는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경우, 함부로 서명하지 마십시오. ·영사와의 면담 시 향후 진행될 사법절차, 현지 법체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가족과 연락을 하고 싶을 경우, 사법당국 또는 담당영사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변호사비, 보석, 소송비를 지불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속해외송금서비스"를 활용합니다.
인질/납치		·필리핀, 과테말라, 중국 등 인질 및 납치가 빈번한 국가를 여행할 때에는 치안 불안지역을 사전에 파악해 여행을 자제해야 합니다. ·납치된 경우, 자제력을 잃지 말고 납치범과 대화를 지속하여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합니다. ·눈이 가려지면 주변의 소리, 냄새, 범인의 억양, 이동시 도로상태 등 특징을 기억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버스나 비행기 탑승 중 인질이 된 경우, 순순히 납치범의 지시에 따르고 섣불리 대적하려 들지 마십시오.

교통사고	·재외공관에서 사건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받고 필요시 가족에게 연락, 긴급 여권 발급 및 비자관련 협조를 구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두시기 바랍니다(현지 경찰서 번호 안내 및 사건장소 촬영과 녹취기능 등 포함되어 있음). ·급작스러운 사고로 의료비 등 긴급 경비가 필요할 경우, "신속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자연재해	·재외공관에 연락하여 본인의 소재지 및 여행 동행자의 정보를 남기고, 공관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현장을 빠져나와야 합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크게 진동이 오는 시간은 보통 1~2분 정도입니다. 성급하게 외부로 빠져나갈 경우 유리창이나 간판·담벼락 등이 무너져 외상을 입을 수 있으니 비교적 안전한 위치에서 자세를 낮추고 머리 등 신체 주요부위를 보호합니다. ·해일(쓰나미)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높은 지대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이동합니다. ·태풍·호우 시 큰 나무를 피하고, 고압선 가로등 등을 피해 감전의 위험을 줄입니다. ·자연재해 발생시, TV·라디오 등을 켜두어 중앙행정기관에서 발표하는 위기대처방법을 숙지합니다.
대규모시위 및 전쟁	·시위대의 감정이 고조되어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대비해 긴급 출국하는 편이 좋습니다. ·당장 출국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사콜센터 혹은 재외공관에 여행자의 소재와 연락처를 상세히 알려 비상시 정부와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하게 귀국 또는 제3국으로 이동해야하는 경우 재외공관에서는 비자발급, 여행증명서 발급 등의 출국절차를 지원해드립니다.
테러/폭발	·현지 경찰서에 해당 건을 신고하고, 우리 재외공관에도 연락을 취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폭발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바닥에 엎드려 신체를 보호합니다. 통상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2차 폭발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 미리 일어나서는 안되며 이동시에는 낮게 엎드린 자세로 이동합니다. ·화학테러, 독가스 등 생화학 가스가 살포된 경우, 병원균이나 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테러 등의 경우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호흡을 멈춘 채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신속히 현장을 이탈해야 합니다.
마약소지 및 운반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약범죄를 중범죄로 다루고 있고, 소지 사실만으로도 중형에 처하는 나라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이 자신의 수하물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수하물을 항상 가까이에 두고 수하물이 단단하게 잠겼는지 확인합니다. ·복용하는 약이 있는 경우 의사의 처방전을 항상 소지해 불필요한 입국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아이들의 장난감 등을 통해 마약이 운반되기도 하므로, 모르는 사람에게서 선물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여행중 사망	·여행 도중 동행인이 사망한 경우 재외공관에 연락하여 사망자의 성명, 사망일시, 사망 장소 및 유해안치장소, 사망원인, 사망자의 한국주소, 본적, 유족의 성명과 주소, 사망자의 여권번호 및 발급일을 신고합니다.

보이스 피싱	·해외 유학·여행 관련 정보(SNS 게시, 항공권·유학계획 공개 등)는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 노출을 자제하고, 현지 연락처 등 비상연락처를 국내 가족과 미리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영사콜센터(02-3210-0404) 또는 경찰청(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위에서 소개한 내용은 모두 <외교부 해외안전여행-해외안전정보-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2. 해외여행 중 도움받기

안전한 해외여행 도움받기

영사안전콜센터 이용

▪ 해외여행자는 여행 중 위기상황이 생겼을 때 영사안전콜센터에 연락하여 사건·사고 접수,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안내, 가까운 재외공관 연락처 안내 등 전반적인 영사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국내: 02-3210-0404(유료)

▹ 해외

√ 유료: 현지국제전화코드 +82-2-3210-0404

√ 무료:현지국제전화코드 +800-2100-0404 /+ 800-2100-1304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 영사안전콜센터 해외 무료연결 번호는 현지 일반전화 또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세요. 그 외에 영사안전콜센터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안전여행서비스-영사안전콜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애플리케이션" 활용

▪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경우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해외안전여행´을 검색하여 설치해 두시면 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 좌충우돌 상황별 카툰, 공관 위치 찾기, 영사안전콜센터번호, 대사관&총영사관 연락처 및 현지 긴급구조 연락처 등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에서 소개한 내용은 모두 <외교부 해외안전여행-해외안전정보-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해외여행 도움받기

해외여행 중 건강관련 주의사항

▪ 즐겁고 건강한 해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해외여행 중에는 다음의 사항에 주의해 주세요(질병관리청 해외여행건강정보 → 해외여행중 참조).

구분	주의사항
음식과 물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 비누와 손 씻을 물이 없다면 60%이상 알코올을 포함하는 세척 gel을 사용하세요. ·생수나 끓인 물, 탄산수만 마시는 게 좋습니다. 수돗물, 분수물, 얼음은 먹지 않도록 합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은 피하고, 음식은 완전히 익힌 것만 드세요. ·완전히 파스퇴르화된 제품을 제외하고는 유제품을 먹지 마세요.
곤충과 동물	·30%-50% DEET을 사용한 곤충 기피제를 사용하세요. ·야외에서는 긴팔 옷, 긴 바지, 모자를 착용하세요. ·말라리아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시기(황혼에서 새벽까지)에는 방충망이 설치되거나 에어컨디셔닝이 되는 방에 머무르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을 통해 전염될 수 있는 질환(광견병, 페스트 등)예방을 위해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을 건드리거나 만지지 마세요. 만약 물렸거나 할퀴었다면 상처를 비눗물로 세척하고 의사를 찾아 광견병 백신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자외선	·자외선에 과다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팔과 다리를 덮는 옷 입기,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와 창이 넓은 모자 착용, SPF 15 이상의 선크림 바르기 등).
운전 및 교통사고	·사고에 대비해 반드시 보험에 들어두세요. ·국내 운전면허증과 함께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세요. ※ 한국면허 인정국가 확인 및 국제운전면허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면허발급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렌트카는 타이어, 안전벨트, 스페어바퀴, 전등, 브레이크 등을 점검하세요. ·여행국의 교통관습을 알아두세요. ·낯선 곳이나 조명이 어두운 길에서는 운전을 피하세요.

수상레크레이션	·구명조끼 사용법 등 안전수칙을 숙지하세요. ·얕은 물이라도 어린이는 어른이 주위에서 감독하세요. ·다이빙 전에 물의 깊이를 확인하고, 흐린 물 속에는 뛰어들지 마세요. ·스파나 사우나에서는 극단적인 온도를 피하세요. ·물가나 강둑, 늪지대에서는 반드시 신발을 신으세요.

※ 보다 자세한 해외여행관련 건강정보는 <질병관리청 해외여행건강정보 → 해외여행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된 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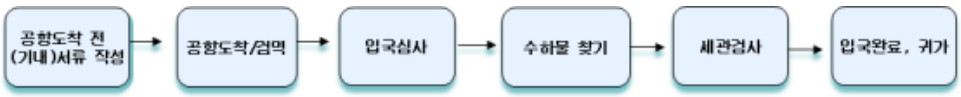
3.3. 입국

3.3.1. 입국절차

입국절차 한눈에 보기

입국절차도

▪ 해외여행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를 거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입국절차별 주요 내용

공항도착 전 기내서류 작성

▪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 건강상태 질문서(「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검역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직접 입국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4제1항제3호).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현황은 <해외감염병 NOW>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당 1장, 가족 또는 단체인 경우라도 개별 작성해야 합니다.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 개인당 1장, 가족인 경우 가족단위로 1장을 작성하면 되고 신고물품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위 서류들은 귀국하는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이 나눠주므로, 공항 도착 전에 기내에서 미리 작성하면 입국수속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항도착 및 검역

▪ 발열감시

▹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입국 시 발열감시를 받습니다.

▪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 검역감염병 발생국가에서 직접 입국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항공기 내에서 작성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4제1항제3호 및 별지 제7호서식).

▪ 검역조치

▹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검역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출처: 국립검역소-검역정보-검역의 과정-항공기검역).

√ 의심환자 : 채변 등 가검물채취·검사 및 격리지정병원 후송조치

√ 의심환자와의 접촉자 : 자택격리

√ 그 밖의 해외여행자 : 시·군구 보건소에 명단을 통보하여 추적감시

√ 차량·열차: 소독명령

입국심사

▪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해외여행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6조제1항 본문).

▪ 입국심사는 입국심사대(내국인과 외국인 심사대로 분리되어 있음) 앞 대기선에서 여권을 준비하고 있다가 순서가 되면 심사관에게 제출하여 받으면 됩니다.

▪ 해외여행자는 자동출입국심사를 통해서도 입국할 수 있으며,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면 일반 유인심사보다 신속하게 출입국심사가 가능합니다.

> ※ 자동출입국심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해외여행 하기-출국-출국절차>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하물 찾기

▪ 입국심사를 마치면 수하물 수취대 번호를 확인하고 지정된 수하물수취대로 이동하여 수하물을 찾습니다.

▪ 본인의 수하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 분실수하물 카운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세관검사

▪ 입국통관절차

▹ 세관신고서의 작성

√ 항공기 도착 전에 승무원이 기내에서 세관신고서를 배부해 줍니다.

√ 신고서 기재요령을 읽어보시고 의문이 나는 사항은 승무원에게 작성방법을 문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 세관의 휴대품검사

√ 법무부의 입국심사절차를 마치면 수하물을 찾고 면세통로(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 또는 세관검사통로(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 중 하나를 선택해 나갑니다.

√ 세관의 휴대품검사는 X-ray 검색기와 문형금속탐지를 이용한 간접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가방을 열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세통관

▹ 해외여행자 1명당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US$) 800달러 이하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제외함)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이 반입하는 술,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table>
<tr><th>구분</th><th colspan="3">면세한도</th><th>비고</th></tr>
<tr><td>술</td><td colspan="3">용량은 2리터(ℓ)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다.</td><td></td></tr>
<tr><td rowspan="6">담배</td><td colspan="2">궐련</td><td>200개비</td><td rowspan="6">둘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td></tr>
<tr><td colspan="2">엽권련</td><td>50개비</td></tr>
<tr><td rowspan="3">전자담배</td><td>궐련형</td><td>200개비</td></tr>
<tr><td>니코틴용액</td><td>20밀리리터(㎖)</td></tr>
<tr><td>기타유형</td><td>110그램</td></tr>
<tr><td colspan="2">그 밖의 담배</td><td>250그램</td></tr>
<tr><td>향수</td><td colspan="3">100밀리리터</td><td></td></tr>
</table>

▪ 과세통관

▹ 해외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이 면세범위를 초과했거나 반입이 제한된 물품을 반입한 경우 세관에 유치됩니다. 유치된 물건 중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당일통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현장통관을 신청하고, 당일통관이 불가능하거나 당일통관을 원하지 않는 물품은 다음날 휴대품과에 통관을 신청해 통관할 수 있습니다.

▹ 2명 이상의 동반가족이 미화(US$)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세트를 휴대 반입할 경우 1명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2조제3항).

※ 해외여행자의 입국통관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면세점 이용』 콘텐츠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공항이용안내-입국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3.2. 해외여행 후 건강정보

해외여행 후 건강정보

해외여행 후 건강관련 주의사항

▪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는 건강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가까운 병원의 의사를 찾아 적절히 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출처: 질병관리청-해외여행건강정보-해외여행 후).

- 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한 경우
  - √ 입국 할 때,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제출
- 입국 시 감염병 증상이 있는 경우
  - √ 감염병 증상 발생 시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상담
- 의학적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 만성질환(심부전, 당뇨, 만성호흡기 질환 등)을 앓고 있는 경우
  - √ 귀국 일주일 이내에 열, 설사, 구토, 황달, 소변이상, 피부질환이 생기는 경우
  - √ 여행하는 동안 심한 감염성 질환에 노출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 √ 여행하는 동안 동물에게 물린 경우
  - √ 개발도상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 여행 전 항말라리아 치료를 받은 경우
  - √ 귀국 후에도 같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귀국 후에도 말라리아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 말라리아는 가벼운 질병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 사망 할 수도 있습니다. 말라리아 위험 지역의 여행 중 혹은 이런 지역의 여행을 마치고 귀국 후(1년까지) 열이 나거나 독감 같은 증상이 생기면 즉시 의사를 찾아가 해외여행을 한 적이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 ※ 보다 자세한 해외여행관련 건강정보는 <질병관리청-해외여행건강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해외여행관련 분쟁해결

4.1. 법원 밖에서의 해결

4.1.1. 관광불편신고를 통한 해결

관광불편신고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관광불편신고

▪ 관광을 위한 시설(수단)의 이용에 따른 위법·부당행위 및 불친절 등에 대해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관광불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출처: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국민참여-관광불편신고).

신고방법

▪ 관광불편신고는 홈페이지,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및 엽서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출처: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국민참여-관광불편신고).

[관광불편신고 안내]

· 전화: (국번없이)1330

· 팩스: 033)738-3734

· 주소: (26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10

· 이메일: tourcom@knto.or.kr

· 인터넷 신고: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knto.or.kr)-국민참여-관광불편신고

※ 관광불편 신고채널 및 신고방법, 처리현황 조회, 관광불편신고엽서 신청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국민참여-관광불편신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여행불편처리센터를 통한 해결

여행불편신고

여행불편처리센터에의 여행불편신고

▪ 해외여행자는 여행업 등록업체인 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과 관련된 각종 불편, 계약불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운영하는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참고: 한국여행업협회 여행불편처리센터 홈페이지).

여행불편관련 상담 및 신고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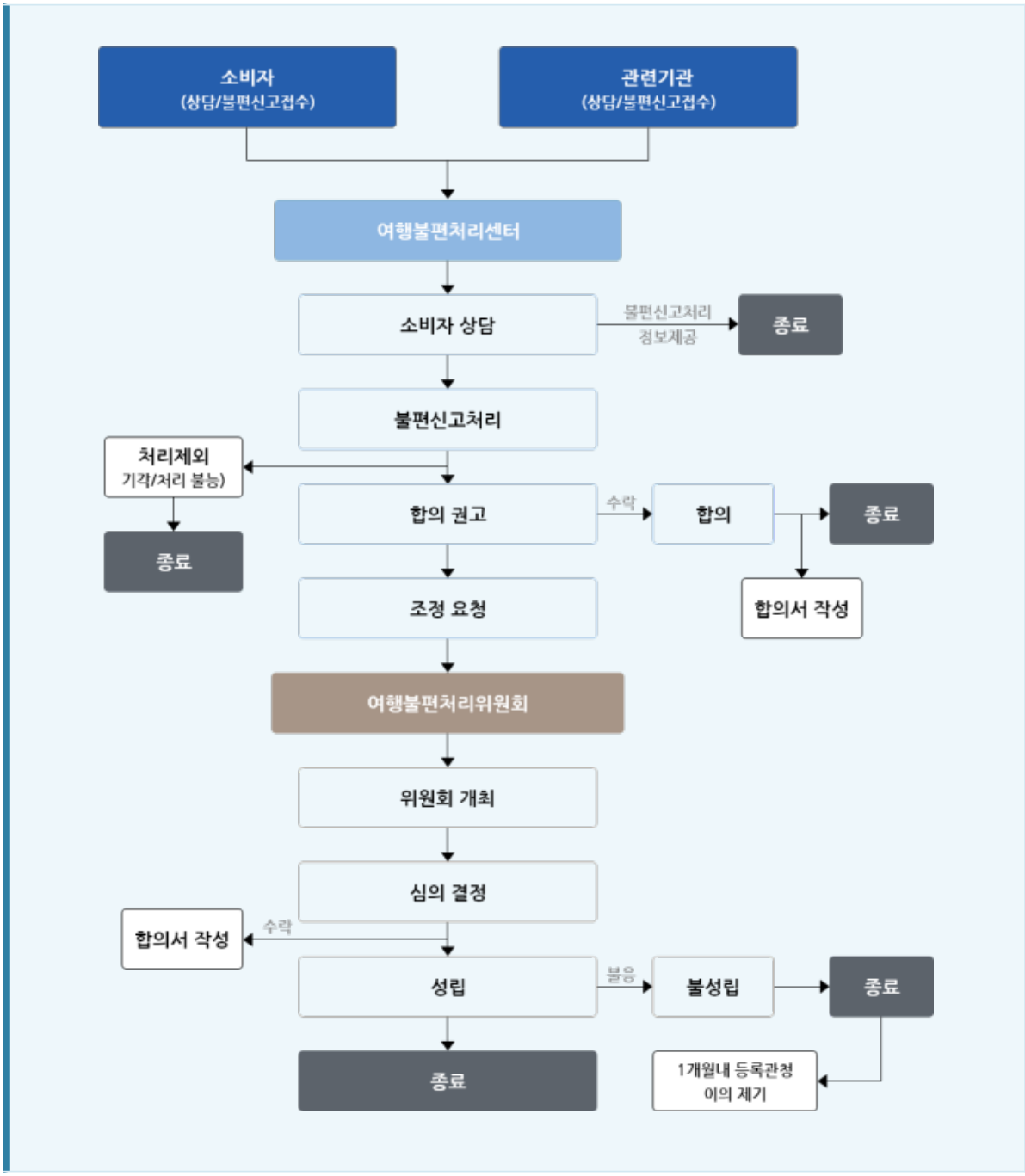
▪ 해외여행자는 여행업 등록업체인 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각종 불편, 계약불이행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 여행불편센터에 문의[☎ (국번없이)1588-8692]하여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또한,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 여행정보센터-여행준비-여행불편처리센터>에서 불편신고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여행불편신고의 처리

여행불편신고의 처리과정

▪ 여행불편신고의 접수 및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 여행정보센터-여행준비-여행불편처리센터).



※ 여행불편처리센터에의 불편신고접수, 신고절차, 처리사례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여행불편처리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3. 소비자단체를 통한 해결

소비자단체를 통한 해결

소비자단체의 상담 및 합의권고

▪ 해외여행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에서 해외여행관련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받거나 해외여행자와 사업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28조제1항제5호).

> ※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목록, 연락처 등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현황 및 연락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 담당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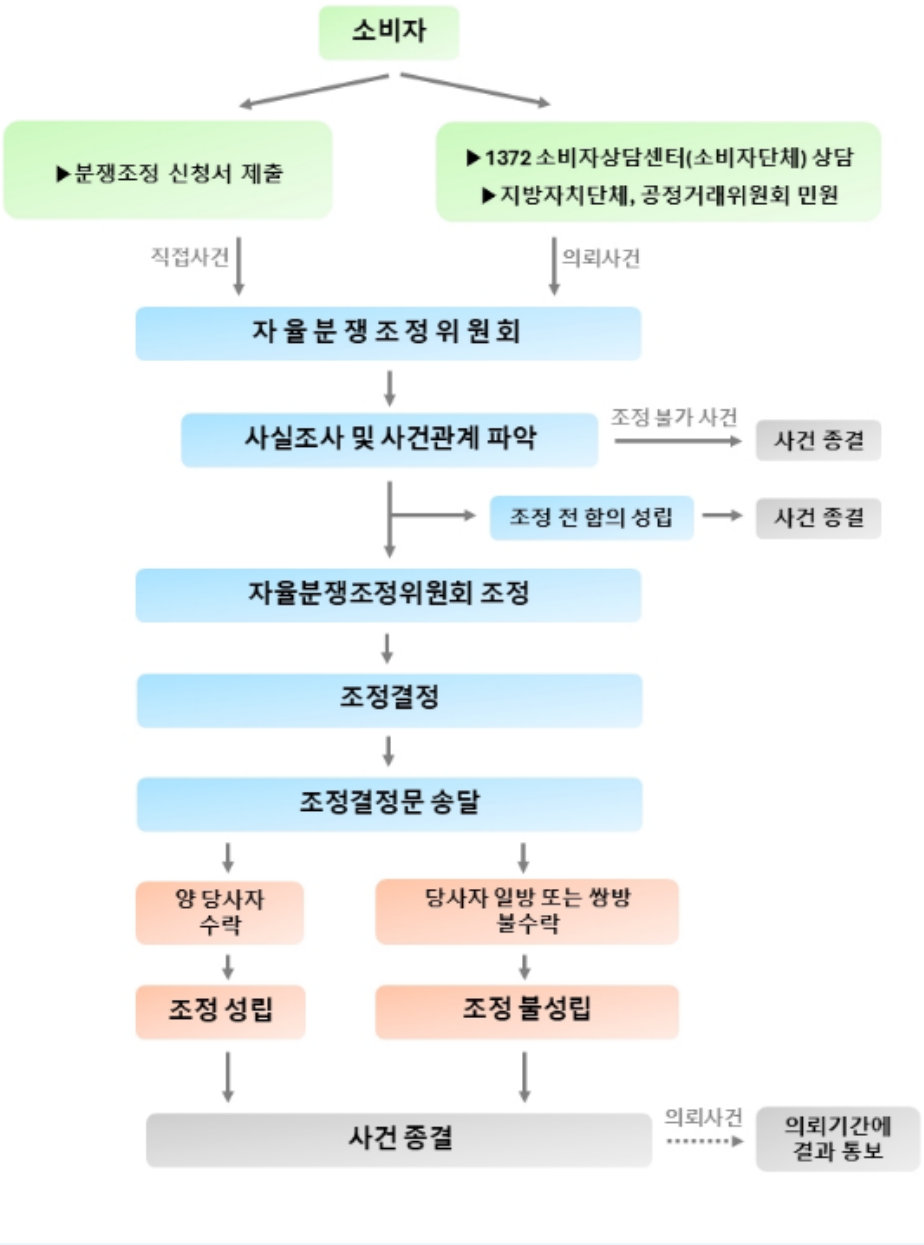
소비자단체협의회를 통한 해결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적 분쟁조정

▪ 해외여행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외여행자가 직접 또는 소비자단체가 해외여행자를 대신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31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자율적 분쟁조정절차

▪ 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자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분쟁조정안내-분쟁조정절차).



※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 분쟁조정사례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4.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통한 해결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통한 분쟁해결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의 피해구제 신청

▪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전화나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7조).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합의권고

▪ 소비자피해구제기구는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합니다.

▪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는 그 내용대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분쟁의 당사자나 분쟁에 관여한 소비자피해구제기구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제1항).

> ※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구체적인 소비자피해구제절차는 해당 시·도의 조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현황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비생활센터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소비생활센터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소비생활센터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소비생활센터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소비자센터
경기도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
충청북도	충청북도 소비생활정보망
충청남도	충청남도 소비생활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
전라남도	전라남도 소비물가정보센터
경상북도	경상북도 소비자행복센터
경상남도	경상남도 소비생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

4.1.5.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소비자상담

▪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대응방법 안내 등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의 상담신청은 전화(국번없이 1372)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 해외여행자는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신청접수, 통보 및 사실조사

▪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피해구제 접수사실이 통보됩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주장과 사업자의 해명을 토대로 서류검토, 시험검사, 현장조사, 전문가자문 등을 통해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합의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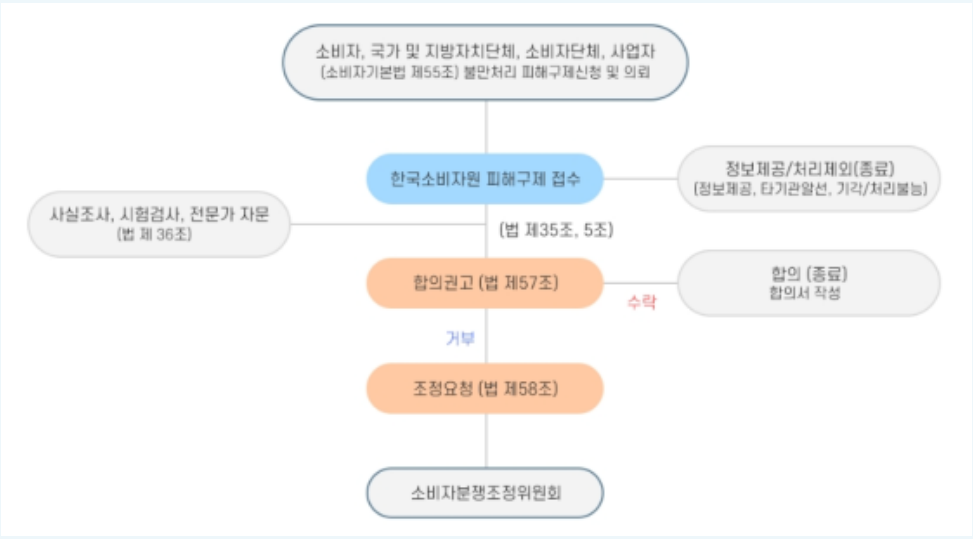
▪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건은 종결됩니다. 사실조사 결과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합의권고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7조).

▪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으로서 조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8조).

※ 위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으로서 의료, 보험, 농업 및 어업 또는 그 밖에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8조제2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4조).

피해구제 절차도

▪ 위에서 살펴본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한 눈에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피해구제안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

▪ 분쟁조정 신청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서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않거나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나 그 기구 또는 단체의 장은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제1항).

▪ 분쟁조정 기간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6조제1항).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6조제2항).

▪ 분쟁조정 절차

▹ 분쟁조정을 위한 자문 및 의견청취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제3항).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절차에 앞서 이해관계인·소비자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제4항).

▹ 분쟁조정 결정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1항).

▹ 소비자분쟁조정 당사자의 수락여부 통지

√ 분쟁조정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2항).

▪ 분쟁조정 효력

▹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4항).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를 한 눈에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절차안내-분쟁조정).



※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방법 및 절차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해외여행관련 피해구제 사례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피해구제>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2. 법원을 통한 해결

4.2.1. 법원을 통한 해결방법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

▪ 해외여행 관련 분쟁은 민사조정, 화해, 독촉절차(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 등 법원을 통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방법

▪ 민사조정

▹ "민사조정"이란 민사(民事)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자주적·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공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 민사조정절차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개시됩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 화해

▹ "화해"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731조 및 제732조).

▹ 화해의 종류

종류	내용
제소전화해	민사상 다툼에 대해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소송상 화해	소송계속 중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민사소송법」 제220조)

▪ 지급명령(독촉)(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사건유형별 절차안내-민사 참조)

▹ "지급명령 절차"는 채무자가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와 달리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

▹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 민사소송

▹ "민사소송"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사건유형별 절차안내-민사 참조).

▹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절차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방법의 내용,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콘텐츠 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사건유형별 절차안내-민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